성신교정 장학금 지급규정

제정 1992. 개정 2024. 4. 23.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학칙 제71조 및 대학원학칙 제39조에 의거, 성신교정(이하 '본교정'이라 한다) 학부, 일반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22.3.1.]
- 제2조(적용범위) 본 교정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및 교외 인사나 각 장학재단에 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. [개정 2022.3.1]
- 제3조(장학위원회) [개정 2022.3.1] ① 장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장학위원회를 둔다. [신설 2022.3.1.]
 - ②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[신설 2022.3.1.]
 - 1. 장학금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[신설 2022.3.1.]
 - 2.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 [신설 2022.3.1.]
 - 3. 각종 장학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[신설 2022.3.1.]
 - 4. 기타 장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[신설 2022.3.1.]
- 제4조(수혜대상) 본 교정의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[개정 2012. 3. 1/2014. 3. 1, 2022.3.1.]
 - 1. 학부 재학생
 - 2. 일반대학원 재학생 [개정 2022.3.1.]
 - 3. 재학생 중 가정형편상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[개정 2022.3.1.]
 - 4. 기타 장학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 [개정 2022.3.1.]

제5조(자격제한) [삭제 2012. 3. 1]

- 제6조(장학금의 종류) [신설 2022.3.1., 삭제 2023.8.1.] ①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금과 교 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. 〈개정 2020.11.13., 삭제 2022.3.1., 신설 2023.8.1.〉
 - 1. 교내장학금 : [별표1], [별표2] [개정 2022.3.1.]
 - 2. 교외장학금 : [별표3] [개정 2010. 9. 1, 2022.3.1.]
 - 3. [개정 2010. 9. 1, 삭제 2022.3.1.]
 - 4. [개정 2010. 9. 1/2014. 3. 1, 삭제 2022.3.1.]
 - 5. [개정 2012. 3. 1/2014. 3. 1, 삭제 2022.3.1.]
 - 6. [신설 2012. 3. 1/2014. 3. 1, 삭제 2022.3.1.]
 - 7. [삭제 2022.3.1.]

- 8. [신설 2006. 12. 5, 개정 2018.3.10, 삭제 2022.3.1.]
- 9. [삭제 2022.3.1.]
- 10. [삭제 2022.3.1.]
- 11. [삭제 2022.3.1.]
- 12. [신설 2014. 3. 1, 삭제 2022.3.1.]
- 13. [삭제 2022.3.1.]
- ② 장학금은 성격에 따라 등록금성 장학금과 비등록금성 장학금으로 구분한다. [개정 2007.
- 10. 25, 삭제 2022.3.1., 신설 2023.8.1.]
- 1. 등록금성 장학금 : 수업료, 입학금 등 실제 대학(원) 등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장학금 [신설 2023.8.1.]
- 2. 비등록금성 장학금 : 기숙사비, 생활비 등 학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장학금과 근로, 교내봉사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[신설 2023.8.1.]
- 제7조(교내 장학생의 선발) ① 교내 각종 장학생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선발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부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. [개정 2022.3.1.]
 - ② 교내 장학생의 선발 시에는 「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」을 충족할 목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.
- 제8조(교외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) 교외 장학생은 국가기관, 교외인사나 외부 장학재단에서 추천 의뢰한 조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추천 및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외 장학생의 선발이 본 교정에 위임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 [신설 2022.3.1.] ① [개정 2012.3.1.] 삭제 2022.3.1.]
 - ② [삭제 2022.3.1.]

제9조(장학금의 취소) [삭제 2022.3.1.]

- 제10조(중복수혜) ①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수혜가 가능하다. 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다. [개정 2012. 3. 1/2014. 3. 1, 2022.3.1.]
 - 1. 성적우수장학금과 학업장려장학금 [신설 2022.3.1., 개정 2023.8.1.]
 - 2. 장학위원회에서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장학금 [신설 2022.3.1., 개정 2023.8.1.]
 - 3. [신설 2022.3.1., 삭제 2023.8.1.]
 - 4. [신설 2022.3.1., 삭제 2023.8.1.]
 - 5. [신설 2022.3.1., 삭제 2023.8.1.]
 - ② 국가장학금 및 공공기관의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가 가능하다.
 - ③ 비등록금성 장학금과 그 외 장학위원회에서 지정한 장학금은 중복수혜 방지 대상에서 제외되며,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다. [신설 2022.3.1., 개정 2023.8.1.]

제11조(규정의 개폐) 본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[개정 2012. 3. 1]

제12조(대학원 장학금) [삭제 2022.3.1.]

제13조(유학지원장학금) [삭제 2022.3.1.]

제14조(입학금의 감면) [신설 2017. 3. 14. 삭제 2022.3.1.]

- 제15조(장학금 지급중지 및 회수)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성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한다. [신설 2022.3.1., 개정 2024.4.23.]
 - 1. 휴학자 [신설 2022.3.1., 개정 2024.4.23.]
 - 2. 자퇴자 및 제적자 [신설 2022.3.1., 삭제 2023.8.1., 신설 2024.4.23.]
 - 3. 국가 및 공공기관의 교외장학금은 해당기관의 방침에 따른다. [신설 2024.4.23.]

부 칙

- ① 이 규정은 1992년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이 규정은 199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⑥ 이 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⑦ 본 개정 규정(제6조 [별표1])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8) 본 개정 규정([별표1])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9) 본 개정 규정(제6조 제10조 [별표1])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① 본 개정 규정(제6조, [별표1])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① 본 개정 규정(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[별표1], [별표2]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① 본 개정 규정(제6조, 제7조 [별표1])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3) 본 개정 규정(제4조 제6조 제10조 [별표1])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A) 본 개정 규정([별표1])은 201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(b) 본 개정 규정(제14조)은 201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되,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(b) 본 개정 규정(제6조, 별표1, 별표1-1)은 201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☞ 이 개정 규정(제6조)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되,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규정(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[별표1], [별표2], [별표3])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6조, 제10조, 제15조, [별표1], [별표2])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규정(제15조)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24학년도 1학기 부터 적용한다.

[별표1] 교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(학부) <개정 2016.5.12., 2018.3.10., 2022.3.1., 2023.8.1.>

| 장호 | 장학금 명칭 수혜기준 | | 지급액 | 비고 | | |
|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--|
| 공 | 우수입학A | 입학자 중 수능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상위 등급 1과목) 등급의 합이 5이내인 자 | 4년간 수업료 전액 | | | |
| | 우수입학B | 입학자 중 수능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상위 등급 1과목) 등급의 합이 7이내인 자 | 1년간 수업료 전액 (1학년 재학기간) | | | |
| | 우수입학C | 수시전형의 전형총점 최고 득점자 (※ 우수입학A, 우수입학B의 대상자가 없 는 경우 선발) | 첫 학기 수업료 전액 | | | |
| | 성적우수 | 학년별 성적 1등 우수자 학년별 성적 2등 우수자 학년별 성적 3등 우수자 | 수업료의 2/3 수업료의 1/2 수업료의 1/3 | 등록금성 | | |
| | 가족 | 본 대학교에 직계가족이 2명 이상 재학할 경우 저학년 학생 (저학년의 기준은 학번, 생년월일 순) | 수업료의 30% | | | |
| | 보훈면제 |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로서 소정의 서류 를 제출한 자 (단,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) | 수업료 전액 | | | |
| | 학장 | 본 교정 교육이념의 실현에 적합하다고 판단 되어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| 일정액 | | | |
| | 연수/탐방 | 해외문화탐방 및 각종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자로서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| 일정액 | 비등록금성 | | |
| | 생활안정 |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(당해연 도) 중 선발된 자 | 학기당 500,000원 | | | |
| | 근로 |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수행하는 자 | 일정액 (근로시간에 따름) | | | |
| | 교내봉사 | 교내활동을 통해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| 일정액 | | | |
| | 튜터 | 학업부진 학생의 학습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 | 일정액 (1인 최대300,000원) | | | |
| | 양업 |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| 수업료의 20% | 등록금성 | | |
| 교구 | 신학원 |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아 대신학교에서 생활 하며 양성을 받는 성직지망자 | 신학원비의 80% | 비등록금성 | | |
| | 선교 | 성직지망 외국인 신학생 | 신학원비 전액 | | | |
| 수도 | 평화 | 수도자 학생 전원 | 수업료의 50% | 등록금성 | | |
| 1 -1- | 교회학위A | STB과정 마지막 학년의 수도자 | 1년간 수업료의 20% | ত ব ল ১ | | |
| | 학업장려 |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 이상인 일반학생 | 수업료의 20% | | | |
| | 교회학위B | STB과정 마지막 학년의 일반학생 | 1년간 수업료의 30% | | | |
| 일반 | 하상 |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계곤란 일반학생 중 신청하여 선발된 자 | 수업료의 30% (기초~3분위 : 50%) | 등록금성 | | |
| | 만학도 | 만학도전형 입학자 중에서 신청하여 선발된 자 | 수업료의 30% | | | |
| | 주거안정 | 일반학생 중 선발된 자의 주거비 지원 | 일정액 | | | |
| | 취업지원 | 취업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(결과제출 완료자 에 한하여 지급) | 일정액 | 비등록금성 | | |
| | TLM 서버l고기] | | | | | |

[장학생 선발조건]

- 1) 성적우수장학금, 학업장려장학금 :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
- 2) 가족장학금 :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,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
- 3) 근로장학금, 교내봉사장학금 : 직전학기 평점평균 2.5 이상인 자
- 4) 하상장학금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,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
- ※ 수업료 : 입학금 제외

[별표1-1] <신설 2018.3.10., 삭제 2022.3.1.>

[별표2]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(일반대학원) <개정 2022.3.1., 2023.8.1>

| 장학금 명칭 | | 수혜기준 | 지급액 | 비고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공통 | 입학금감 면 | 본 교정의 학부과정 및 석사과정 졸업 후 상위 대학원 과 정에 진학한 자 | 입학금 전액 | | |
| | 우수입학 | 학부성적 평점평균 4.0 이상인 자 (단, 입학 후 수혜자격 은 재학 중 평점평균 3.5 이상 유지한 자) | 수업연한 내 수업료 전액 | 등록금성 | |
| | 학술장려 | 박사과정 재학 중 논문등재지(등재후보지)에 논문이 게재 된 자 | 수업료의 일정액 | | |
| | 선교실습 | 선교실습 및 이에 따르는 활동 지원 | 일정액 | भी | |
| | 학장 | 본 교정 교육이념의 실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| 일정액 | | |
| | 연수/탐방 | 해외문화탐방 및 각종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자 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| 일정액 | | |
| | 생활안정 |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(당해연도) 중 선발 된 자 | 학기당 500,000원 | | |
| | 근로 |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수행하는 자 | 일정액 (근로시간에 따름) | | |
| | 튜터 | 학업부진 학생의 학습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 | 일정액 (1인 최대 300,000원) | | |
| | 대건 | 교구직권자의 추천을 받은 성직지망자 | 수업료 전액 | 등록금성 | |
| 亚 子 | 성직자 | 교구소속 성직자 | 석사 : 수업료의 50% 박사 : 수업료의 70% | | |
| | 선교 | 성직지망 외국인 신학생 | 신학원비 전액 | 비등록금성 | |
| 수도 | 평화 | 수도자 학생 전원 | 수업료의 50% | | |
| | 교회학위 A | STL과정의 수도자 | 수업료의 20% | _ _ 등록금성 _ | |
| 일반 | 학업장려 |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 이상인 일반학생 | 수업료의 20% | | |
| | 교회학위 B | STL과정의 일반학생 | 수업료의 30% | | |
| | 하상 | 가계곤란의 이유로 장학금을 신청한 일반학생 중 신청하 여 선발된 자 | 수업료의 30% | | |
| | 주거안정 | 일반학생 중 선발된 자의 주거비 지원 | 일정액 | 비등록금성 | |

[장학생 선발조건]

1) 우수입학장학금 : 석사과정에 입학한 본교 출신의 수도자 및 일반학생 중에서 학부성적 평점평균 4.0 이상인 자 (입학성적 사정 기준)

- 2) 근로장학금 : 직전학기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
- 3) 학업장려장학금, 하상장학금 :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하고, 평점평균 3.5 이상인 자
- ※ 대학원장학금은 수업연한에 한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STL예비과정 이수자 및 근로, 대건, 선교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한다.

[별표3] 교외장학금의 종류 〈신설 2022.3.1.〉

| 장학금 종류 | 장학분류 | 지급기관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김대건성인장학금 | 기타 | (사)김대건성인기념사업회 |
| 외국인신학생양성장학금 | 기타 | 양성소위원회 |
| 꾸르실료장학금 | 기타 |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|
| 보훈장학금 | 기타 | 서울북부보훈지청 |
| 국가장학금 | 가계곤란 | 한국장학재단 |